

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대표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제 1 조 (목적) < 생 략 >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 “서비스”란 <u>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“사용자”에게 제공되는 오픈뱅킹서비스를 총칭합니다.</u></p> <p>2~6. < 생 략 ></p> <p>7. “추심이체”라 함은 “<u>수취인</u>”의 <u>전자적 장치를 통한</u>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“지급인”의 “출금계좌”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.</p> <p>8. “운영기관”이란 <u>오픈뱅킹공동업무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을 말합니다.</u></p> <p>9. “오픈뱅킹공동업무”란 <u>은행이 다른 은행과 별도 제휴없이 “운영기관”을 통하여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운영·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u></p>	<p>제 1 조 (목적) < 좌 등 >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 “서비스”란 <u>“은행”이 “오픈뱅킹공동업무”로서 본 약관에 의하여 “사용자”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 및 은행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총칭합니다.</u></p> <p>2~6. < 좌 등 ></p> <p>7. “추심이체”라 함은 <u>“수취인”의 추심지시에</u> 따라 은행이 “지급인”의 “출금계좌”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.</p> <p>8. “운영기관”이란 <u>“오픈뱅킹공동업무”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하며, “참가기관”이란 오픈뱅킹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출금·입금, 각종 조회 등의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을 말합니다.</u></p> <p>9.“오픈뱅킹공동업무”란 <u>“참가기관”이 “운영기관”의 『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』에 동의하여 “운영기관”의 “오픈뱅킹공동업무” 중계시스템과 “참가기관”의 처리시스템을 오픈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다른 “참가기관” 내의</u></p>	<p>비대면 제한 표현 개선, 서비스 추가</p> <p>비대면 제한 표현 개선</p> <p>금융결제원 공동 이용약관과 표현 일치</p>

<p>가. “출금이체업무”란 은행의 출금에 동의한 <u>“이용자”</u>의 “출금계좌”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은행의 수납계정 또는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나. “입금이체업무”란 은행의 지급계정 또는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“수취인”의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다. “잔액조회업무”란 <u>“이용자”</u>가 은행이 제공하는 “서비스”를 통해 본인계좌의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라. “거래내역조회업무”란 <u>“이용자”</u>가 은행이 제공하는 “서비스”를 통해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마. “계좌실명조회업무”란 은행이 “수취인”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<u>“이용자”</u>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『전자금융거래법』 및 『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 등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그 외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.</p>	<p><u>금융서비스를 “은행”이 다른 은행과 별도 제휴 계약 없이 “사용자”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업무를 총칭합니다.</u></p> <p>가. “출금이체업무”란 은행의 출금에 동의한 <u>“사용자”</u>의 “출금계좌”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은행의 수납계정 또는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나. “입금이체업무”란 은행의 지급계정 또는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“수취인”의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다. “잔액조회업무”란 <u>“사용자”</u>가 은행이 제공하는 “서비스”를 통해 본인계좌의 잔액을 <u>실시간으로</u>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라. “거래내역조회업무”란 <u>“사용자”</u>가 은행이 제공하는 “서비스”를 통해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마. “계좌실명조회업무”란 은행이 “수취인”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<u>“사용자”</u>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<u>10. “스크래핑(scraping)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화면에 보여지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</u></p> <p><u>11. “파싱(parsing)”은 어떤 페이지(문서, 화면 등)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특정 패턴이나 순서로 추출하여 정보로 가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</u></p> <p>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『전자금융거래법』 및 『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, 『<u>예금거래기본약관</u>』 등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그 외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.</p>	<p>서비스 추가에 따른 용어 정의</p> <p>대면 시행에 따른 문구 조정</p>
--	--	--

<p>제 3 조 (서비스의 종류)</p> <p>① 은행은 “사용자”에게 <u>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해 “조회”와 “이체”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.</u></p> <p>1. 조회 서비스 : 사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본인계좌에 대한 <u>잔액 및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</u></p> <p>2. 이체 서비스(출금이체업무 및 입금이체업무) : <u>사용자의 출금에 동의한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 등으로 실시간 입금하는 서비스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>3. 금융서비스 :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금융상품 신규가입 및</p>	<p>제 3 조 (서비스의 종류)</p> <p>①은행은 “사용자”에게 “오픈뱅킹공동업무”를 통해 <u>다음과 같은 “서비스”를 제공합니다.</u></p> <p>1. 조회 서비스: “사용자”가 은행이 제공하는 “서비스”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본인계좌에 대한 <u>잔액 및 거래내역,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사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잔액조회업무 서비스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거래내역조회업무 서비스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다. 계좌실명조회업무 서비스</u></p> <p>2. <u>이체 서비스: “사용자”가 출금에 동의한 “출금계좌”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“사용자”의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 등으로 실시간 입금하는 서비스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출금이체업무 서비스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입금이체업무 서비스</u></p> <p>②은행은 “사용자”에게 “오픈뱅킹공동업무”에 부가하여 <u>다음과 같은 “서비스”를 제공합니다.</u></p> <p>1. <u>자동이체 서비스: “사용자”의 사전 지시에 따라 “사용자”가 출금에 동의한 “출금계좌”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특정 계좌 등으로 정해진 기일에 입금하는 이체하는 서비스 (상세 내용은 은행의 ‘계좌간 자동이체 약관’을 준용함)</u></p> <p>2. 금융 서비스: “출금계좌”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금융상품 신규 가입,</p>	<p>규약과 용어 일치</p>
---	--	------------------

<p>환전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서비스</p> <p>4. 자금모으기 : 다수의 출금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</p> <p>(신설)</p> <p>5. 기타 은행이 정한 서비스</p> <p>② 은행은 서비스 별 거래 가능한 계좌 등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.</p> <p>제 4 조 (서비스의 제공)</p> <p>①~② < 생략 ></p> <p>(신설)</p> <p>제 5 조 (이체대상 및 출금한도)</p>	<p><u>외화</u> 환전 등 다양한 금융 거래를 이용하는 서비스</p> <p>3. 자금 모으기 <u>서비스</u>: 다수의 “출금계좌”에서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</p> <p><u>4.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: “사용자”의 동의 하에 “사용자”의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정보와 거래내역을 “은행”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서비스 등을 통해 “스크래핑”이나 “파싱”등의 방법으로 등록한 후, “사용자”에게 보유 금융상품의 정보, 거래내역, 수입, 지출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</u></p> <p>5. 기타 은행이 정한 서비스</p> <p><u>③</u> 은행은 서비스 별 거래 가능한 계좌 등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.</p> <p>제 4 조 (서비스의 제공)</p> <p>①~② < 좌 동 ></p> <p><u>③ “오픈뱅킹공동업무”를 위해 “운영기관”에 설치한 중계시스템과 “참가기관”의 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“서비스”를 제공하는 은행 중에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“서비스”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“사용자”는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“서비스”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5 조 (이체대상 및 출금한도)</p>	<p>대면 시행에 다른 문구 추가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p>①~② < 생략 ></p> <p>③ <u>한도대출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등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 요청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가 제한됩니다.</u></p> <p>제 6 조 (출금계좌 지정 동의 및 철회)</p> <p>① “사용자”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과 <u>요건에 의한 전자서명</u>으로 출금계좌의 출금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~③ < 생략 ></p> <p>제 7 조 (이용계약의 체결)</p> <p>① < 생략 ></p> <p>② <u>“가입신청자”가 동의 의사를 은행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게 되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에 “서비스”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③~④ < 생략 ></p> <p>(신설)</p>	<p>①~② < 좌 등 ></p> <p>③ <u>“출금계좌”의 출금가능금액(한도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이체 요청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체거래가 제한됩니다. 또한 “출금계좌”에 등록된 지급정지 등 법적제한, 금융거래 한도계좌 등 “출금계좌”의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6 조 (출금계좌 지정 동의 및 철회)</p> <p>① “사용자”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과 <u>요건에 따라 “출금계좌”의</u> 출금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~③ < 좌 등 ></p> <p>제 7 조 (이용계약의 체결)</p> <p>① < 좌등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삭제 ></p> <p>②~③ < 좌 등 ></p> <p>④ 은행은 “스크래핑” 절차에 동의한 “사용자”에게 “통합 자산관리 서비스”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“통합자산관리서비스”가 부분적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.</p>	<p>의미 명확화</p> <p>비대면 제한 표현 개선</p> <p>비대면 제한 표현 삭제</p> <p>서비스 추가</p>
--	---	---

<p>제 8 조 (인증)</p> <p>① “사용자”는 본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, 성격,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“서비스”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은 PIN 인증, 휴대폰인증 등(이하 “본인 인증수단”이라 한다) 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합니다.</p> <p>제 9 조 (사용자에 대한 통지) < 생 략 ></p> <p>제 10 조 (사용자 정보의 제공 및 변경)</p> <p>① < 생 략 ></p> <p>② “사용자”는 은행에 제공한 고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은행에 알려야 하며,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.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『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에 따릅니다.</p> <p>제 11 조 (이용계약의 해지) < 생 략 ></p> <p>제 12 조 (서비스의 중단)</p> <p>① < 생 략 ></p> <p>1~4. < 생 략 ></p> <p>5. 기타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테러, 해킹, DDOS, 국가비상사태 등</p>	<p>제 8 조 (인증)</p> <p><u>은행은 서비스의 종류 및 보안수준에 따라 별도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9 조 (사용자에 대한 통지) < 작 동 ></p> <p>제 10 조 (사용자 정보의 제공 및 변경)</p> <p>① < 작 동 ></p> <p>② “사용자”는 은행에 제공한 고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은행에 알려야 하며,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.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『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 및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에 따릅니다.</p> <p>제 11 조 (이용계약의 해지) < 작 동 ></p> <p>제 12 조 (서비스의 중단)</p> <p>① < 작 동 ></p> <p>1~4. <작 동 ></p> <p>5. <u>기타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테러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</u></p>	<p>대면 시행에 따른 문구 조정</p> <p>대면 시행에 따른 문구 조정</p> <p>문구 명확화</p>
--	---	---

<p>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</p> <p>6. < 생략 > ②~③ < 생략 ></p> <p>제 13 조 (수수료) < 생략 ></p> <p>제 14 조 (준수사항)</p> <p>① ~ ④ < 생략 ></p> <p>⑤ 사용자가 송금금액, 수취은행,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(이하 “착오송금”이라 합니다)하였음을 <u>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</u> 은행은 『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</p> <p>⑥ < 생략 ></p> <p>제 15 조 (면책) < 생략 ></p> <p>제 16 조 (약관의 변경) < 생략 ></p> <p>제 17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< 생략 ></p>	<p><u>있는 경우 및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, 논리폭탄, 메일폭탄,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인한 전자적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</u></p> <p>6. < 좌 동 > ②~③ < 좌 동 ></p> <p>제 13 조 (수수료) < 좌 동 ></p> <p>제 14 조 (준수사항)</p> <p>①~④ < 좌 동 ></p> <p>⑤ 사용자가 송금금액, 수취은행,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(이하 “착오송금”이라 합니다)하였음을 <u>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</u> 『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,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 및 『내부 규정』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</p> <p>⑥ < 좌 동 ></p> <p>제 15 조 (면책) < 좌 동 ></p> <p>제 16 조 (약관의 변경) < 좌 동 ></p> <p>제 17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< 좌 동 ></p>	<p>대면 시행에 따른 문구 조정</p>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18 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 < 생 략 >

제 18 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 < 좌 등 >

